

대법원 2022. 4. 28 선고 2022다20009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4. 28 선고 2022다20009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9 선고 2021나13034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

판결 선고 2022. 4. 28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1나1303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

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태악, 주 심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대법관 오경미